

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규정

3-1-12

규정번호	3-1-12
제정일자	2008.3.1
최근개정	2025.12.1
개정차수	7차 개정
관리부서	학사학위운영센터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(인가신청) 조정 및 전형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2. 전공심화과정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(개정 2025.12.1.)
3.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4. 전공심화과정 수요자 의견수렴 및 환류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5.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(자체평가)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(개정 2021.06.21.)
6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학사학위운영센터장이 된다.(개정 2016. 9.28., 2018.08.27.,2024.7.24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사학위운영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을 부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는 1/2 이상으로 하고,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생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(개정 2022.09.26.)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(후단신설 2022.09.26.)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 6 조 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12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규정

② 간사는 학사학위운영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09.26.)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8 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3> <생략>

<14>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②·③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15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3항, 제5조제1항, 제7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, 제5조제2항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3-1-12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, 제5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2호)